



# Contents



181

## I. 유기농식품 시장개황

182

## II. 생산동향

182

1. 유기농식품의 정의

183

2. 유기농산물의 생산량

183

가.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차지비중

183

나. 유기농산물의 연도별 생산동향

184

3. 유기농 가공식품의 생산량

185

4.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수 및 품목별 도입비율

186

5. 유기농업 생산 지원현황

198

## III. 유통동향

198

1. 주요 유통구조

198

가. 일본 유기농산물의 유통실태

198

1) 유기농산물의 판매배경

198

2) 주요 취급품목

199

3) 유기농산물의 매입방법

200

2. 유기농산물의 출하상황

201

3. 유기식품과 일반식품 대비 가격동향

201

가. 유기농산물의 가격설정 방법

202

나. 전국주요도시의 주요야채 소매가격 · 판매 동향

203

다. 전국 주요도시평균 가격 및 판매수량

207

라. 병렬 판매점포의 품목별 가격, 판매수량

209

마. 일본의 유기농산물 품목별 판매현황

# Contents

214

## IV. 소비동향

214

1. 유기농 시장규모

215

2. 슈퍼마켓 실태조사(청과물대상)

215

가. (주)라이프코퍼레이션

216

나. (주)京成스토아

216

다. (주)이토요카도

217

라. 이온(주)

217

## VI. 교역동향

217

1.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국가

218

가. 신선 유기농산물 수입

218

나. 유기농 가공식품 수입

219

2. 유기식품 수입방법 3. 무역장벽

221

## V. 유기농식품 관련 규정 및 법규

221

1. 유기식품의 일본 농림 규격

221

가. 유기농산물의 일본 농림 규격

225

나.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

225

다.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229

2.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제도

229

가. 유기 식품의 검사인증제도

231

## VI. 향후전망

233

※ 첨부 1 : 유기농식품 관련기관 리스트 및 사이트

233

※ 첨부 2 :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 리스트



## I. 유기농식품 시장개황

- 일본에서는 2003년경부터 일반식품점에서도 유기 인증마크가 붙은 유기식품을 일부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자연식품점을 제외하면 제한된 품목으로 유럽의 슈퍼마켓 등에서 이는 '유기농 식품 붐' 대비 매우 작은 규모임
- 유기농산물의 국내생산량은 농산물 전체 중 0.16%정도로 유럽의 생산량 대비 수십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가공식품을 포함한 유기식품의 일본시장규모는 3,000억엔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일본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12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유기식품 판매는 크게 세 가지의 경로로 성장되어 왔음
  - 첫째는 유기농산물의 택배 경로로 운영조직형태는 각각 차이가 있으나 1990년대에 유기농산물의 보급과 판매촉진에 크게 공헌한 것은 「생협」 「라뎃슈보야」 「大地の會 (대지의 모임)」 등의 유기농산물의 직판조직이었음
  - 두 번째 채널은 건강식품등을 취급하는 「자연식품점」 으로 특히 유기채소류의 판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단 어느 점포도 단독으로 복수점포를 가진 체인형 소매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없었음. 상품분야는 약간 다르나 그 예외는 소재가공형의 건강식품판매회사로서 「환케루」 나 「DHC」 등의 대형건강식품 메이커는 독자적으로 점포를 전개할 뿐 아니라 건강식품(기능성식품)의 밴더로서 편의점이나 약국에 상품을 납품함으로써 가공식품분야에서 성장하여왔음
  - 세 번째 채널은 유기채소류를 사용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업체임.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패스트푸드는 「모스푸드서비스」 나 「후렛슈네스버거」, 외식서비스분야에서는 「와타미」 나 「조나산」 을 들 수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백화점의 고급반찬류 코너에 진출하여 일상적인 일, 양, 중국식 반찬의 점포전개를 시작한 「로크 필드」 가 「오가닉」 이 아닌 식품의 「건강과 안심·안전」 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함
- 마지막으로 양관점이나 식품슈퍼에서도 최근 유기식품(감농약, 자연식품)의 취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품질에 관해서도 오랫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차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자스코의 PB상품 「그린 아이」의 전개나 니치레이나 카토요시에 의한 유기채소가공품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되는데, 이토요카도의 「얼굴이 보이는 야채」 등을 들 수 있음

## II. 생산동향

### 1. 유기농식품의 정의

- 일본 내에서는 유기농업의 명확한 개념에 관한 이해도는 낮은 편임. 따라서 유기농업 기본이념의 명확한 정립과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 및 소비자의 협력을 얻어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의 각 측면에서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2006년12월,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112호. 이하 「유기농업 추진법」이라 칭함)이 시행되었음
- 동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을 증진하여 농업생산 활동에 유래하는 환경에의 부담을 큰 폭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 즉 유기농업은 자연이 본래 가지는 생태계 등의 기능을 활용해 작물의 건전한 생육환경의 형성이나 병해충의 발생억제를 실현하는 것
- 또한 소비자의 식료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되고 한층 다양화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 농산물의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업 방식임
- 한편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2005년3월25일 각의결정)에서는 일본 농업 생산 전체의 본연의 자세를 환경보전을 중시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농업에 대해서도 유기농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간주함

## 2. 유기농산물의 생산량

### 가.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차지비중

-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량의 비중은 0.16%로 기타 부류를 제외한 품목별 동류 일반 농산물에서의 차지 비중을 살펴보면, 대두가 0.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가 0.18%, 쌀 0.16% 순임
- 품목별 절대 생산물량은 채소류 29,107톤, 쌀 11,369톤, 과수 2,222톤 등인데, 과수류의 경우 유기농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단기간 내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

#### 〈2005 국내총 생산량과 유기농산물의 수량〉

구 분	총생산량(국내)	유기농산물생산수량 <sup>52)</sup> (국내)	총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
채 소	16,279,000톤	29,107톤	0.18%
과 수	3,708,000톤	2,222톤	0.06%
쌀	8,998,000톤	11,369톤	0.13%
보 리	1,058,000톤	655톤	0.06%
대 두	225,000톤	877톤	0.39%
녹 차	100,000톤	1,610톤	1.61%
기타 농산물	161,000톤	2,332톤	1.45%
합 계	30,529,000톤	48,172톤	0.16%

자료) 총생산량 :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개산치)」

격부수량 : 농림수산성 표시규격과 조사

### 나. 유기농산물의 연도별 생산동향

- 유기 JAS제도에 따라 인증된 사업자의 실적보고가 개시된 2001년도부터의 자료를 보면 2001년에는 일본의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3만3700톤이며, 이어 2002년은 4만3800톤, 2003년도에는 4만6000톤, 2004년에는 4만7천톤으로 착실히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4만8천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함

51) 녹차(황차)의 총생산량은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의 공표치

52) JAS법시행 규칙에 근거하는 등록 인정기관으로부터의 보고를 집계

- 따라서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4년간에 42.8%의 대폭증가를 보임

### 〈일본 국내의 유기농산물 수량〉

(단위: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3,734	43,759	46,192	47,428	48,172

자료) 농림수산성 표시규격과 조사

(JAS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등록 인정기관으로부터의 보고를 집계)

- 한편, 유기농 생산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유기채소류임
  - 일본국내의 유기채소의 생산량은 2001년도에는 1만9600톤으로 국내 유기농산물의 58.3%를 차지하고 있음
  - 3년 후인 2004년도에서 국내의 유기야채생산량은 2만9700톤으로 해당연도에 대한 유기농산물생산량의 62.5%까지 늘어나고 있음. 또한 2004년도의 생산량은 6만3100톤으로 수량으로는 늘어났으나 유기농산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4.0%까지 하락함

### 〈일본 국내의 유기채소 생산동향〉

(단위: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19,675	24,545	28,125	29,674

자료) 농림수산성 발표

## 3. 유기농 가공식품의 생산량

- 유기농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의 생산량 동향을 보면 국내에서의 유기농 가공식품은 2001년도에 7만6800톤에서 2002년도는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고 2003년도는 전년대비 12.1%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어서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8.0% 증가하여 생산량은 12만5900톤으로 나타남. 이러한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01년도에서 2004년도 3년간에 6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대두’ 가공품의 생산실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두부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 2004년도 기준 두부 생산량은 5만9400톤으로 국내 유기농산



가공식품의 47.2%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된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수량〉

(단위: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4,356	46,908	64,409	87,828

자료) 농림수산성 발표

## 4.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수 및 품목별 도입비율

- 유기농업의 특성 상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이하 「화학비료」 라고 함) 및 농약을 사용하는 통상의 농업에 비해, 병해충 등에 의한 품질·수량의 저하가 일어나기 쉬운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참여율은 아직 적은 상황임
- 2005년 일본 농림수산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전체 판매농가 196.3만 가구 중 유기농산물 인정사업자(농가)는 0.5만가구<sup>53)</sup>에 달함

### 〈유기농 인증사업자(농가)추이〉

(단위:가구)

2002년6월	2003년5월	2004년3월	2005년3월	2006년3월	2006년9월 <sup>54)</sup>
3,639	4,273	4,453	4,664	4,611	5,104

자료) 농림수산성 표시규격과 조사결과

- 품목별 유기 농업의 도입비율은 2001년도의 조사에서는 전국 재배면적의 0.6%가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을 미사용 하고 있으며 2001년도 이후의 전국 도입상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음

53) 국내 판매농가수 및 환경보전형농업 도입농가수 :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림업 센서스」 (2005년)조사결과. 이는 1JAS법에 근거하는 등록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유기농산물 JAS규격에 근거하는 생산을 실시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합 등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수를 집계함

54) 2006년 9월은, 동년3월 개정JAS법 시행에 수반해 구법 및 신법에 근거하는 인정사업자(농가) 수를 집계

## 〈2001 품목별 유기농업 방식 도입동향〉

(단위:%)

작 물		화학비료 · 화학합성농약 미사용	좌측 중에서 퇴비에 의한 토양개량을 실시
합 계 <sup>55)</sup>		0.6	0.4
벼농사		0.6	0.4
맥 류		0.1	0.0
두 류		0.7	0.2
	노 지	0.6	0.5
	시 설	0.2	0.2
	노 지	0.8	0.3
	시 설	0.1	0.0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1년도 지속적 생산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환경보전형 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 출하상황 조사보고서」 (2003.3월)을 기본으로 농산진흥과에서 작성

## 5. 유기농업 생산 지원현황

- 일본정부의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은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06년 법률 제112호)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 ②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의 목표, ③ 추진시책 ④ 기타 유기농업 추진 시 필요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농업자가 유기농업에 용이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추진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및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유기농업은 현재상태로서는 병해충발생 등에 가세해 많은 경우에서 노동시간이나 생산코스트의 대폭적인 증가를 수반한다.

이러한 유기농업이 안고있는 과제를 극복하고 농업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에

55) 「합계」는 벼농사, 맥류, 두류, 야채, 과수 외, 감자류, 콩예농작물을 합계한 것임. 비율은 작물 마다 각각 2001년 재배면적에 대한 비율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하여 그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가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  
유기농업에의 참여는 아직은 적으나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자가 유기농업에 의한 경영을 안정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판로개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유기농업의 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충실히 하여 그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을 더욱 증가시켜 가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에 임하는 농업자 (이하 「유기농업자」라고 한다.) 나 농업단체등과 농산물의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제휴·협력해,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 판매 또는 이용의 확대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비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

소비자의 안전하고 양질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중에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유통량을 확대하여 해당 농산물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확대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및 소비자의 사이에서 그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에 관한 정보가 수발신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 175호, 이하 「JAS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적정

한 표시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소비자의 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유기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와 소비자와의 제휴의 촉진

유기농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육, 지산지소, 농업체험 학습, 도시 농촌교류 등의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나 유기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와의 교류·제휴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의 자주성의 존중

유기농업 추진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이 지금까지는 오로지,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일부의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의 자주적인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것을 고려해, 이러한 사람 및 향후 유기농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도 아직 적은 현상에 대한 유기농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의 실정, 농업자 기타 관계자의 의향에의 배려를 안하거나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를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2조 유기농업의 추진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 1. 목표의 설정

농업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가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유기농업 추진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이념에 맞도록 유기농업의 추진 및 보급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 및 소비자의 공통의 목표를 내거는 것으로 한다.

특히, 현재상태로서는,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체계의 확립과 함께, 정부 및 지

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의 추진을 향한 체제의 정비 등이 중요한 과제인 것을 고려해, 이러한 농업자가 유기농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정비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유기농업의 추진 및 보급의 목표

### (1)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체계화

유기농업에 농업자가 용이하게 종사할 수 있듯이 하기위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병해충 등에 의한 품질이나 수량의 저하가 일어나기 쉬운 등의 과제를 가지는 유기농업에 대해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한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략 2011년까지, 시험연구독립행정법인, 도도부현, 대학, 유기농업자, 민간단체 등에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 등에 의해, 안정적으로 품질·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기농업의 기술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 (2) 유기농업에 관한 보급 지도의 강화

농업자등을 유기농업에 임할 수 있듯이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략 2011년도까지, 정부와 도도부현의 연수를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선진적인 유기농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하면서, 의욕적인 농업자에게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센터나 시험연구기관 등에 보급지도원을 배치하는 등, 보급 지도원에 의한 유기농업의 지도체제를 정비한 도도부현의 비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의 증진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나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로는, 모니터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유기농업이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것 등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과 조화를 갖춘 농업인 것을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에 대해서, 대략 2011년도까지 50%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추진계획의 책정과 유기농업의 추진체제의 강화

현재상태로서는 아직도 참여가 적은 유기농업을 추진 및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대해서 각각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 및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기본방침에 근거하는 도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기농업 추진법 제7조 제1항에서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으로 입각해서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고 한다.) 을 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추진계획을 책정·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의 비율을 대략 2011년도까지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전국각지에 있어 기본방침, 추진계획에 근거하는 추진을 진행시키기 위해, 유기농업자나 유기농업의 추진에 임하는 민간단체 등을 시작해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소비자, 행정부국, 농업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유기농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비율을, 대략 2001년도까지 도도부현에 있어서는 100%, 시읍면에 있어서는 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3조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 1. 유기 농업자등의 지원

##### (1)유기농업의 도입에 대한 지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기농업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 등 생산· 유통시설 등의 공동이용 기계· 시설의 정비의 지원에 노력 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110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에 관한 계획(이하 「도입계획」 이라고 한다.) 의 책정을 유기농업자 등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도입계획의 책정 및 실시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 특례조치를 수반하는 농업개량자금의 대부등에 의한 지원에 노력한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실시하는 농지·물·환경보전 향상대책을 활용하여 유기농업을 포함한 환경부하를 큰 폭으로 절감하는 지역에서 결정된 선진적인 도입에 대해서, 해당 도입을 실시하는 농업자에게도 배분 가능한 교부금등을 교부하는 것으로써, 유기농업자의 지원에 노력한다. 더구나 유기농업에 의한 지역농업의 진흥을 전국에 전개해 가기 때문에, 정부는 그 모델이 될수 있는 유기농업을 핵으로 한 지역진흥계획을 책정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진흥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기농업자, 지방공공단체, 농업단체, 유기농업의 추진에 임하는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얻고, 지역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실증 및 습득의 지원을 실시한다.

## (2) 새롭게 유기농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계단체와 제휴·협력하고, 유기농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신규 취농희망자가 원활히 취농할수 있도록, 전국 및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취농상담, 도부현 농업대학교나 취농준비교, 유기농업의 추진에 임하는 민간단체 등에 있어서의 연수교육의 추진, 취농 지원자금의 대부에 의한 지원 등에 노력한다.

또한 유기농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신규 취농희망자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정부 및 도도부현은, 유기농업자나 유기농업의 추진에 임하는 민간의 단체등과 제휴·협력하고, 정부,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단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의 의의나 실태, 유기농업의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시책에 관한 지식,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의 실시에 노력한다.

## (3)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판매면의 지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농업단체등과 제휴·협력하고,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 특색을 살린 판매나 소비자·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에 대해, JAS법에 근거하는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5년10월27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605호)이나 생산정보 공표 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5년6월30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163호)

등의 활용, 농산물의 생산·출하정보를 유통업자, 판매업자, 실수요자 및 소비자에게 넓게 제공하는 넷 카탈로그 등을 이용한 정보의 수발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직매시설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활동 등에 임하는 유기농업자에 대해 소비자나 수요자와의 정보의 수발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농산물 직매시설 등의 정비지원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상당정도의 양으로 결정되어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단체와 제휴·협력하고, 유통업자, 판매업자 또는 식품제조업자나 외식업자 등의 실수요자와 유기농업자, 농업단체등과의 의견교환이나 상담장소의 설정, 도매시장 유통에 있어서의 제3자 판매나 직접 산지에서 매입하는 구조의 적용 등을 통해서 유기농업자나 농업단체등과 유통업자, 판매업자나 수요자와의 중개에 노력한다.

## 2. 기술개발 등의 촉진

### (1)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

정부 및 도도부현은 협력하여 유기농업자를 시작해 민간단체 등에서 개발, 실천되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탐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 등에 의해, 품질이나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기농업의 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해당기술의 도입효과, 적용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시험 등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부는 유기농업의 실태를 근거로 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과학적인 해명이나, 이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개발등, 유기농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개발의 실시에 있어서는, 시험연구독립행정법인을 시작으로 도도부현, 대학, 민간의 시험연구기관, 행정부국, 유기농업자등의 참가를 얻고,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개발의 계획적이고 한층 효과적인 추진에 노력한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그 입지 조건에 적응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다른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지역의 농업



생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증시험 등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 (2)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촉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기농업에 관한 유용한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도도부현의 보급지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시읍면, 농업단체 등 지역의 관계기관이나, 유기농업자, 민간단체등과 제휴·협력하고, 농업자에게의 연구개발 성과보급에 노력한다.

또한 유기농업자 및 향후, 유기농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연구개발의 성과, 지견에 근거하는 효과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정부 및 도도부현은, 유기농업자의 협력을 얻고, 보급지도원등에 대한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등과 관련되는 기술 및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연수의 내용, 정보제공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자등의 기술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것을 시험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 3.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와의 제휴를 기본으로 하면서 인터넷의 활용이나 심포지엄의 개최에 의한 정보의 수발신, 자료제공, 우량한 도입을 실시한 유기농업자의 공적을 널리 알림을 통해서 소비자를 시작하여 유통업자, 판매업자, 수요자, 학교관계자등에 대해서 자연순환 기능의 증진, 환경에의 부하의 저감, 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 유기농업이 가지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지식의 보급개발 및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 의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에 의한 우량한 도입에 대한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 및 정보의 발신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JAS법에 근거하는 유기농산물 등의 표시 룰·검사 인증제도의 보급개발에 노력한다.

#### 4.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의 증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식육이나 지산지소, 농업체험 학습, 도시 농촌교류 등의 활동과 제휴하여 지역의 소비자나 아동·학생, 도시주민 등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 아래에서 영위되는 유기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 의한 유기농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에 의한 우량한 도입에 대해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 및 정보의 발신에 노력한다.

#### 5. 조사의 실시

정부는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동향 등의 기초적인 정보,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의 동향, 지역의 농업과의 제휴를 포함한 유기농업에 관한 도입사례 그 외의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한 단체 그 외의 유기농업의 추진에 임하는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얻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 6.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한 활동의 지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활동에 자주적으로 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정보의 제공, 지도 및 조언 그 외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사람과 제휴·협력해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민간단체 등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량한 도입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 및 정보의 발신에 노력한다.

#### 7. 정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정부는 도도부현에 대해, 기본방침, 해당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의 실

태 등을 근거로 해 정하는 유기농업의 추진의 방침, 해당방침에 근거해 대개 5년간에 실시하는 시책, 유기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관·단체등과의 제휴·협력, 유기농업자등의 의견반영, 추진상황의 파악 및 평가방법을 내용으로하는 추진계획의 책정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책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도 및 조언에 노력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유기농업의 의의나 실태,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체계, 선진적인 도입사례 등 유기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의 실시에 노력한다.

#### 제4조 그 외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1. 관계기관·단체와의 제휴·협력체제의 정비

###### (1)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조직 내의 제휴체제의 정비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은,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의 각 측면에서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계획적이며 한층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담당하는 부국간의 제휴를 확보하는 체제정비에 노력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같은 체제를 정비하도록 움직인다.

###### (2) 유기농업 추진체제의 정비

유기농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 및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자나 민간단체 등이 자주적으로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제휴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국, 지방 블록의 각 단계에 있어 유기농업자나 유기농업의 추진에 자주적으로 임하는 민간단체 등을 시작해 유통업자, 판매업자, 수요

자, 소비자, 행정 부국 및 농업단체 등에서 구성하는 유기농업의 추진체제를 정비해, 이러한 사람과 제휴·협력하고, 유기농업의 추진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같은 체제를 정비하도록 추진한다.

### (3)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의 추진체제의 정비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시험연구독립행정법인,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에 가세해 유기농업자를 시작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민간단체등과 적극적으로 제휴·협력함에 따라 기술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국, 지방 블록의 각 단계에 대해서 시험연구기관외, 행정·보급 담당 부국, 유기농업자, 농업단체 등의 참가를 얻고, 연구개발이 계획적이고 한층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의견교환, 공동연구 등의 장소설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하는 연구개발의 진척상황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같은 체제를 정비하도록 움직인다.

## 2. 유기농업자등의 의견의 반영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책정에 있어서는 의견공모 수속의 실시, 현지조사, 유기농업자등과의 의견교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유기농업자 그 외의 관계자 및 소비자의 해당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이것들을 해당시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부는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의 동향을 항상 파악해, 그 진척 상황에 따른 시책 등의 검토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같은 체제를 정비하도록 추진한다.

## 3. 기본방침의 재검토

이 기본방침은 유기농업 추진법으로 나타난 기본이념 및 유기농업 추진에 관

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따라서 기본방침의 책정시점에서의 제반 정세에 대응해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유기농업을 포함한 농업을 둘러싼 정세도 크게 바뀌는 것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목표의 달성상황이나 시책의 추진상황 등에 의해서 기본방침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대략 5년간을 대상으로 해 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재검토의 필요성이나 시기 등을 적시 적절히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III. 유통동향

#### 1. 주요 유통구조

##### 가. 일본 유기농산물의 유통실태

- 몇 년 전까지 유기농산물의 유통·판매는 산지와 소비자 제휴라고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이해에 근거한 직접적인 거래를 기본으로 하였음
- 그러나 최근 백화점, 슈퍼, 생협 등 소매단계의 유통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도 이루어지는 등 유통형태가 한층 다양화 되고 있음

##### 1) 유기농산물의 판매배경

- 자연농법그룹(유기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유기전문점
  - 자연농법그룹이나 유기전문점이 유기농산물의 판매를 개시한 1970~75년은 공해문제나 자연파괴라고 하는 고도 경제성장의 병폐가 사회문제화 되었던 시기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확대를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던 시기였음. 이러한 시기에 소비생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의 판매를 실시하게 되었음
- 슈퍼마켓, 백화점, 생협 등 일반소매점
  - 자연농법그룹이나 유기전문점에 비해, 슈퍼나 백화점, 생협은 최근에 소비자의 건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전략의 하나로써 유기농산물의 취급을 실시하고 있음. 이들 일반소매점에서는 유기농산물을 다양한 상품의 구색 혹은 차별화 상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소비 생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자연농법그룹이나 유기 전문점과는 차이점이 있음

##### 2) 주요 취급품목

- 유기농산물로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쌀, 채소, 과일 등 다양하지만 통상,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농산물의 품목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임
- 대표적인 품목은 감자, 양파, 순무 등의 채소류와 귤, 사과, 키위, 바나나 등의 과실류

로 비교적 재배하기 쉽고 저장성이 강한 품목이 많음

- 또한, 백화점에서는 메론, 복숭아 등의 고급 유기농산물을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수퍼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3) 유기농산물의 매입방법

- 유기농산물은 품목의 수량 확보가 곤란하고, 소량 다품목이며 외관과 규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떨어져 평가가 오히려 일반농산물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매시장에서 거의 상장되고 있지 않으며 중도매인들에게 상대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각 판매처별 유기농산물의 매입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래와 같음

- 자연농법그룹은 조직의 구성원인 생산자로부터 매입을 실시
- 유기전문점은 유기농산물 취급 전문상사로부터 매입을 실시
- 수퍼마켓, 백화점 등 소매점 : 일본 전국에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는 도매 시장의 중도매상을 통해 필요한 유기농산물을 발주하여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직접산지를 개발하고 상품개발을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특히, 백화점의 경우에는 중도매상을 경유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생협은 직접 산지를 개발하여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자가 농협에 위탁하고 농협에서는 다시 도매회사에 위탁하여 중도매상이나 소매상에 판매하는 등 농협을 통한 위탁판매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유기농산물은 수량이나 수확기의 변동이 크고 생산자나 산지가 한정되어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 판매가 불규칙하고 일반 농산물 이상으로 매입 판매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유기농산물 수량의 변동에 의한 계획량의 과부족은 점포 판매방식에 의해 유기농산물의 상설코너를 마련하고 있는 쇼핑센터에서 유기농산물의 판매확대에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 유기농산물의 출하상황

### ● 벼

농협·집출하업자	51%
소비자 직매	26%
소매점·레스토랑 등	10%
생협 등 소비자단체	8%
식품 가공업자	3%
기타(자가용을 포함)	2%

### ● 두류

식품 가공업자	56%
소비자 직매	19%
소매점·레스토랑 등	9%
생협 등 소비자단체	9%
농협·집출하업자	7%

### ● 야채(노지)

농협·집출하업자	34%
소매점·레스토랑 등	29%
생협 등 소비자단체	18%
식품 가공업자	10%
소비자 직매	4%
도매시장	3%
기타(자가용을 포함)	2%

### ● 야채(시설)

소매점·레스토랑 등	55%
생협 등 소비자단체	17%
농협·집출하업자	16%
도매시장	10%
식품 가공업자	1%
소비자 직매	1%



● 과수(노지)

농협·집출하업자	35%
소비자 직매	22%
소매점·레스토랑 등	19%
생협 등 소비자단체	12%
도매시장	7%
식품 가공업자	3%
기타(자가용을 포함)	2%

● 합계

농협·집출하업자	34%
소매점·레스토랑 등	24%
생협 등 소비자단체	15%
식품 가공업자	14%
소비자 직매	9%
도매시장	3%
기타(자가용을 포함)	1%

자료)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1년도 지속적 생산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환경보전형 농업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출하 상황 조사보고서」 (2003년3월)

### 3. 유기식품과 일반식품 대비 가격동향

#### 가. 유기농산물의 가격설정 방법

- 유기농산물의 매입가격은 생산자와 소매 사업주체가 직접대화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희망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매시장의 중도매업자 또는 상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상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혹은 같은 유기농산물이어도 각각 상품의 품질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격의 비교는 다소 주의를 요하지만, 일반적 경향으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10~30% 정도 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고가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며, 유기농산물의 재배가 일반농산물의 재배에 비해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원격지의 생산자나 상사로부터 구매했을 경우 수송비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 가격의 경우 일반농산물의 가격은 매일 도매가격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데 반해 유기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가격변동이 없으며,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수주에서 1개월이고, 특정품목의 경우는 1년까지도 가격의 변동이 없음

### 나. 전국 주요도시의 주요야채 소매가격 · 판매 동향<sup>57)</sup>

- 2007년1월~3월에 판매된 야채 가운데, 병렬 판매점포<sup>58)</sup>에 있어서의 고부가 가치품(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sup>59)</sup> 및 수입품에 대해서, 국산표준품<sup>60)</sup>과의 가격 비를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유기재배품의 국산표준품과의 가격비 >

(단위 %)

품 목	1월	2월	3월
당 근	170	181	160
시 금 치	171	157	163
감 자	158	185	179
양 파	173	192	201

#### < 특별재배품과 국산표준품과의 가격비 >

(단위 %)

품 목	1월	2월	3월
토 마 토	164	141	168
미 니 토 마 토	129	114	121
피 망	91	94	101
양 파	115	112	188

57) 신선식품 가격판매동향 조사 2007년1월 ~ 3월

58) 병렬 판매점포 : 같은 품목에 대해 국산표준품과 고부가가치품(유기 재배품, 특별재배품) 또는 수입품의 어느쪽인가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점포를 말한다.

59) 유기재배품 :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근거해 농림수산성 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되어 유기 JAS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특별재배품 : 농림수산성에서 나타내고 있는 「특별재배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표시되고 있는 것 및 각 현에 의해 정해져 있는 특별재배농산물의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된 것을 말한다. 덧붙여 상기의외에도, 특별한 재배방법 등에 의해 통상의 것에 비해 품질, 안전등의 가치를 교부해 판매되고 있는 신선야채는 이것에 포함하고 있다.

60) 국산표준품 :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야채 가운데, 품질, 재배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특별한 차별화를 도모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국산품을 말한다.

## 〈수입품과 국산표준품과의 가격비〉

(단위 %)

품 목	1월	2월	3월
브 록 콜 리	80	73	73
마 늘	24	24	26
생 강	60	59	53
생 표 고	46	47	46

### 다. 전국 주요도시평균 가격 및 판매수량

#### ● 무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161	82	1072	216	4	50	301	3	26
2006년	164	77	1204	262	3	44	303	13	33

#### ● 양배추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170	92	1069	264	4	17	267	10	20
2006년	168	93	1203	264	4	15	171	7	47

#### ● 호박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352	24	719	507	7	21	262	28	359
2006년	382	25	798	462	23	40	314	23	456

● 가지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559	23	1033	313	1	2	784	1	37
2006년	589	23	1199	781	0	3	784	2	53

● 시금치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729	2	1053	1043	3	67	887	10	32
2006년	720	23	1189	1087	4	89	932	3	57

● 오이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440	53	1067	555	1	20	650	2	65
2006년	496	43	1203	818	2	11	759	2	88

● 토마토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588	44	1042	881	2	25	969	6	138
2006년	590	46	1204	1196	2	16	995	6	158

● 피망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692	13	1024	1024	0	12	1062	3	98
2006년	806	11	1195	1291	0	22	1040	2	98

● 당근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325	41	1043	561	9	126	437	7	114	189	30	39
2006년	333	39	1178	561	4	105	462	10	170	243	20	18

● 배추

연차별	국산표준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181	52	1059	265	7	30
2006년	201	48	1199	578	35	5

● 마늘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2269	2	923	970	2	10	544	2	568
2006년	2411	1	1002	3025	1	99	611	2	783

● 브로콜리

연차별	국산표준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668	15	849	433	17	566
2006년	602	18	968	477	13	574

● 파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580	22	1044	1139	2	8	708	9	20	304	11	201
2006년	575	23	1201	1326	1	10	804	3	24	375	11	148

● 양상추

연차별	국산표준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340	41	1068	365	7	37
2006년	367	39	1192	487	13	62

● 양파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230	73	1002	396	11	123	288	18	165	210	38	53
2006년	215	75	1156	416	5	136	291	22	207	222	18	78

● 미니토마토

연차별	국산표준품			유기재배품			특별재배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1049	10	1010	1440	1	29	1434	2	112	727	4	26
2006년	1056	9	1169	1562	1	23	1411	2	141	695	3	34

● 생표고

연차별	국산표준품			특별재배품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가격 엔/kg	수량 kg	점포수 점
2005년	1612	7	1025	829	6	345
2006년	1635	6	1185	867	5	363

## 라. 병렬 판매점포의 품목별 가격, 판매수량

■ 국산표준품과 유기재배품의 가격 및 판매수량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무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177	70	216	4	122	5
2006년	157	75	262	3	166	4

### ● 양배추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173	123	264	4	153	3
2006년	166	103	264	4	159	4

### ● 가지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242	128	313	1	130	1
2006년	485	21	781	0	161	1

### ● 토마토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741	56	881	2	119	4
2006년	700	53	1196	2	171	4

### ● 시금치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755	28	1050	1	139	5
2006년	694	30	1092	2	157	7

● 오이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423	60	555	1	131	2
2006년	567	39	818	2	144	4

● 피망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693	6	1024	0	148	5
2006년	776	11	1291	0	166	5

● 당근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305	54	505	6	166	11
2006년	351	36	563	3	160	9

● 양파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203	88	388	6	191	7
2006년	211	77	420	4	199	6

● 파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542	26	1139	2	210	6
2006년	539	16	1326	1	246	5

● 미니토마토

연차별	표준		유기		비율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엔/kg	수량 kg	가격 %	수량 %
2005년	1138	8	1497	1	132	13
2006년	1199	8	1562	1	130	9



마. 일본의 유기농산물 품목별 판매현황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롯데코라	지바현		21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푸치다이콘	지바현		21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유기재배 오이	후쿠시마현		21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사라다 베이비 믹스스	지마현		263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생강	고치현		315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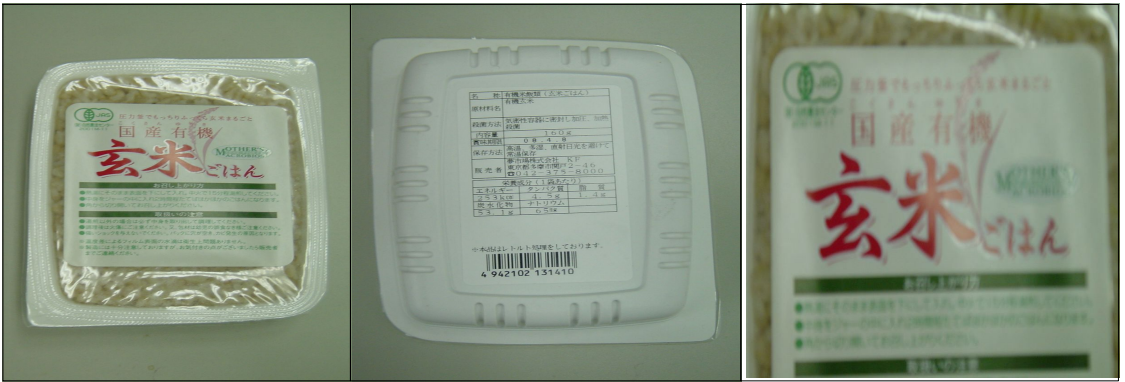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유기두유 무조정	일본	1000ml	28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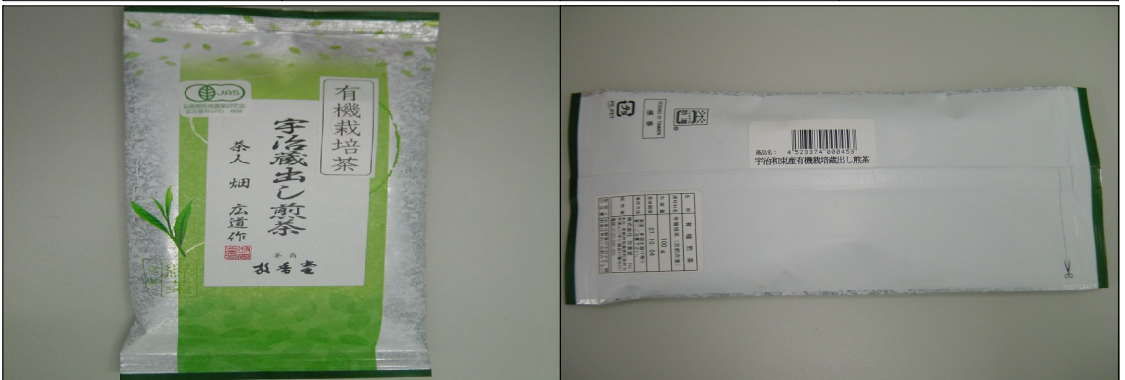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푸치바루 비스켓	프랑스	150g	90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국산유기 현미 밥	일본	160g	25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우지 유기 센차	일본	100g	2,00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유기 간밤	중국	170g	30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마자즈 오니기리	일본	180g	42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유기 낙화생	일본	200g	50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유키 토마토케첩	일본	300g	350엔



상 품 명	산 지	규 격	가 격
워르 너츠	미국	80g	400엔



## IV. 소비동향

- 일본의 식품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상당수는, 유기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전·안심」, 「건강에 좋다」라는 이미지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으며, 농업의 자연 순환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생산 과정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큰 폭으로 절감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나 실수요자의 이해는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임

### 1. 유기농 시장규모(추정)

(단위 : 억엔)

		가계소비 ①	가공·중외식 ②	시장규모 ①+②	
농산물	쌀	43.2	19.9	63.1	
	야채	135.7	29.3	165.0	
	과실	108.9	14.5	123.4	
	맥	0.1	3.1	3.2	
	대두	194.6	71.8	266.4	
	녹차(황차)	73.1	28.9	102.0	
	기타농산물	156.1	148.4	304.5	
	소계	711.7	315.9	1027.6	
가공품	야채	172.6			냉동,통조림,기타야채가공품 합계
	음료	19.3			
	대두가공품	266.3			두부,낫또,된장,간장의 합계
	건면류	9.5			
	녹차	139.0			
	기타가공품	1576.6			
	소계	2183.3			
합계		2895.0		3210.7	

시장조사기관 하베스토 리서치의 발표자료

## 2. 슈퍼마켓 실태조사(청과물대상)

### 가. (주)라이프코퍼레이션

#### ① 회사개요

점포수는 수도권84,긴키권104개로 합계188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 ② 유기농산물 및 특별농산물의 취급현황

- 매입에 대하여 본부 일괄발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청과물 매출액은 약200억엔이며, 취급품목은 300개 정도임. 청과물 전체매출에서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정도이며, 특별재배농산물을 포함하면 10%정도임.
- 대표적인 품목  
코마츠나(小松菜), 당근, 미니토마토, 가지, 레몬(해외), 바나나(해외)
-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은 도매시장의 중간도매업자를 통해 매입하고 있으며 이때 생산자·농업법인의 재배이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매대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품목과 함께 판매되고 있음. 상품의 배치는 소비자의 비교 구매가 가능토록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대해서는 POP 등으로 생산자의 얼굴사진을 넣어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음
-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유기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20%~50% 높으며 특별재배농산물의 경우는 20% 높게 판매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의 판매는 보합추세이며,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힘든 상태인데 이는 높은가격과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계층도 늘고 있어, 향후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매입을 늘려나갈 방침임
- 6년 전에 개발한 당사 PB 「自然大好き」를 강화할 계획임. 이것은 「안전·안심」을 키워드로 농가 및 산지와 직접 연계하는 계획임. 이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산물은 농림수산성 가이드라인의 「감농약재배」 농산물로 향후 매출액의 10%정도 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나. (주)京成스토아

### ① 회사개요

치바현 및 도쿄도를 중심으로 30개 점포를 보유한 슈퍼마켓 체인점으로 각 점포에 안전·안심 「ベジたべる」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大地에 온화하고 가족에 온화하다」라는 안전·건강을 테마로 한 판매정책을 펼치고 있음

### ②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의 취급상황

- 당사의 청과물 연간 매출액은 40억엔 정도로 취급품목은 180품목 수준임
- 각 점포는 도매시장(오타시장 등 4개시장)의 중간업자로부터 발주하고 있음
- 수년 전부터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1%정도가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의 매출이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취급 품목  
오이, 피망, 토란, 감자, 양파, 당근, 토마토, 밀감 등이 있음
- 40개 품목의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을 매입하고 있으며 점포에 따라서는 별도의 매대를 설치하여 15개 품목정도를 판매하고 있음
- 생산자로부터 재배이력을 제출받고 있음
-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 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 산물에 비해 30~50% 정도 높게 판매되고 있음
- 주요 소비자계층은 40세 이상의 주부임

## 다. (주)이토요카도

### ① 회사개요

- 점포수는 180개정도로 이 중 약60%가 동경 인근에 집중되어있음

### ②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의 취급상황

- 청과물 연간 매출액은 약 500억 엔이며, 이중 유기농산물(유기JA마크부착)은 0.5% 정도임
- 주력품목은 감자, 양파, 당근, 시금치, 코마츠나(小松菜), 토마토, 피망, 인젠(채두), 가지꽃콩, 레몬(일본), 바나나(필리핀) 등임
- 매입은 치바에 있는 유기채소 집출하센터 「자연농법」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매입한 유기농 채소는 각 점포로 배송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수준임
- PB (독자개발상품)인 「얼굴이 보이는 채소」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상품에 개인명과 ID번호를 부착시켜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라. 이온(주)

### ① 회사개요

- 이온그룹의 점포 수는 GMS (종합수퍼)를 중심으로 약350개 수준이며, 그룹전체로 볼 때는 9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음

### ②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의 취급상황

- 토마토, 미니토마토, 오이, 가지, 피망, 파프리카, 양배추, 브로콜리, 小松菜, 대파, 청겅菜, 양상추, 시금치, 파슬리, 무, 감자, 당근, 양파, 우엉, 마, 오오바
- 그린아이라는 컨셉 아래 건강과 자연을 배려한 안심·안전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판매하고 있음
- 채소의 매출액 중 그린아이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절과 지역에 의해 다르나 대략 10~20% 정도임

## V. 교역동향

### 1.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국가

- 유기농식품만의 수출입자료는 별도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sup>61)</sup> 일부 자료를 통해 수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유기농식품의 주요 공급 국가는 Eu15개국,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기JAS 제도 하에서 수입된 유기농산물의 물량을 살펴보면 2001년도가 9만4200톤, 2002년도는 8만9000톤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9만7900톤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2004년도에는 44만9600톤에 달함

61) 유기농 제품의 수출동향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수입동향 위주로 게재함

- 2004년도로 비교하면 수입된 유기농산물의 물은 국내의 유기농산물의 10배나 됨. 이렇게 변동이 큰 이유는 수입된 농산물중 「대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농산물」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중에서 「사탕수수」의 영향이 큼

### 가. 신선 유기농산물 수입

#### 〈유기농산물 수입량 동향〉

(단위: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4,186	89,019	297,923	449,649

자료) 농림수산성 표시규격과 조사

(JAS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등록 인정기관으로부터의 보고를 집계)

- 한편 수입된 유기야채는 2만3800톤에 머물러 유기농산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25.3%임

#### 〈유기채소 수입량 동향〉

(단위: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3,818	13,059	26,994	63,123

자료) 농림수산성 발표

### 나. 유기농 가공식품 수입

#### 〈일본국내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수량〉

(단위: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6,755	95,127	106,656	125,881

- 수입된 유기농산물 가공품은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모두 국내에서의 유기농산가공품 생산량을 밑돌고 있음
- 2001년도에는 3만4400톤으로 국내의 절반이하이며 2002년도에는 4만6900톤, 2003년도 6만4400톤, 2004년도에는 8만7800톤으로 국내유기농산물 가공식품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 유기식품 수입방법

- 1) 국내의 등록인정기관 또는 등록 외국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국제조업자등이 생산, 제조한 유기식품에 유기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방법 (JAS법 제19조의3)
- 2) 일본의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방법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한정한다(JAS 법 제15조의 2)]

### ● 동등성 요건

1의 것(2)에 의한 방법의 전제로서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격부의 제도와 동등의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등급제도를 가지는 국가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발행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JAS법제15조 의 2 제2항관계) 이 경우, 「동등의 수준에 있다」라고는, (1) 「격부의 제도와 그 적절한 운용의 담보 조치」와 「격부표시의 신뢰성 확보를 확보하는 제도」가 존재해, 그 내용이 JAS제도와 동등의 수준인 것 (2) 대상이 되는 농림물자에 대한 규격이 일본농림규격과 동등한 것 혹은 그와 상응하는 요건이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 현재상황 2006년 12월 현재, 유기농산물에 관해, JAS법제 15조의2에 있어서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EU15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아르헨티나 및 스위스가 성령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참고조문 ]

(수입업자에 의한 등급표시)

1. 제15조의7 -- 제19조의10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농림물자(이하 이조 및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지정농림물자」라고 칭함)의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법률에 의거 사업소 및 지정농림물자의 종류별로 새롭게 농림수산성 대신(大臣) 또는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아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또는 그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해당 인정에 관한 지정농림물자에 대하여 그 수입하는 해당지정농림물자 또는 그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전항의 증명서는 외국(해당 지정농림물자에 대한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등급의 제도와 동등의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등급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의 정부기관, 기타 이것에 준한 농림수산성 대신(大臣)이 지정한 것에 의해 발행한 것에 한정된다.

3. 농림수산성 대신(大臣)은 전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정에 관한 외국의 정부기관에 준한 것의 명칭 그 외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외국등급기관의 등록)

제19조의6의2 -- 등록외국등급기관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외국농림물자에 대한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등급제도와 동등수준에 있다고 인정된 등급제도를 가진 국가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된다. 제19조의6의4 제1항에 있어서도 같음)에 있는 사업소에 의해 제19조의2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림물자의 종류별로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농림수산성 대신(大臣)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

제19조의6의4 -- 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외국에 있는 사업소에 의해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3의2의 인정[이하 이것을 「인정」이라 칭함]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 한정된다)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한 구분별로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농림수산성 대신(大臣)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무역장벽

- EU의 각국에서는 일본의 유기식품인증제도는 일종의 수출장벽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유기식품검사인증제도」에 대해서 유럽 유기식품의 대일수출의 행정상의 장벽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일본 및 EU의 인증제도는 국제규격인 CODEX (WTO · FAO 합동규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국에서 만들어진 유기식품의 질은 동일하므로 EU내에서 인증된 유기식품에는 자동적으로 일본의 JAS 마크가 붙어야 한다」는 논리로 구주산의 유기식품이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양해를 구하고 있음
- 일본에 들어오는 수입 유기식품의 취급에 대해 농수성은 『유기』 표시가 붙는 상품에는 JAS마크가 필요하며 수입수속절차는 수출국 측의 유기인증제도가 일본과 동등하

다고 인정된다면 농수성대신이 인가한 국내등록기관이 수출국측의 유기인증기관이  
나 수입업자를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구주 각국  
에서는 「EU내의 70군데 인증기관이 신청서를 내야하므로 신청만으로 1년도 넘게  
걸린다」 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V. 유기농식품 관련 규정 및 법규

### 1. 유기식품의 일본 농림 규격

#### 가. 유기농산물의 일본 농림 규격

##### ① 제정의 경위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은, 코텍스 총회에서 1999년에 채택된 「유기적으로 생  
산되는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와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에 준거해 정해진  
것이며 농림물자규격 조사회에 있어서의 심의를 거치고, 2000년1월 개정JAS법에 근  
거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고시했음. ② 내용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은, 유기  
농산물의 생산의 원칙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생산의 방법의 기준 및 명칭의 표시 방  
법을 규정하고 있음.

#### ■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sup>62)</sup>

(목적)

제1조 이 규격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농산물의 생산원칙)

제2조 유기농산물의 생산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의 자연 순환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토양의 성질에 기초한 농지의 생산력을 최대  
한 발휘시키는 것과 동시에 농업생산에 유래하는 환경부하(負荷)를 가능한 한 저  
감(低減)한 재배 관리방법을 채용한 농장에 있어 생산되는 농산물
2. 채취장(자생하고 있는 농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있어서 채  
취장의 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해 채취되는 농산물

(정의)

제3조 이 규격에 있어서 유기농산물은 제4조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62) 2000년1월20일 농림수산성 고지 제59호

(생산의 방법에 대한 기준)

제4조 생산의 방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 항	기 준
농장 등의 조건	<p>1. 농장은 주변으로부터 비료, 토양개선자재 또는 농약(별표1 및 별표2에 게재된 것을 제외. 이하 「사용금지자재」라고 함.)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또한, 논에 있어서는 그 용수에 사용금지자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p> <p>2.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의한 것</p> <p>(1) 다년생작물(목초를 제외)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의 수확 전에 3년이상, 그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파종 또는 모심기전에 2년이상(개척된 농장 또는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농장으로 며, 2년이상 사용금지자재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농장에 대해 새롭게 농작물의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 있어서는 파종 또는 모심기전 1년이상)의 기간, 이하에 게재하는 농장 등에 대한 비배(肥培)관리의 기준, 농장에 파종 또는 모심기하는 종묘 및 농장에 있어서의 유해동식물 방제의 기준에 근거해 농산물의 재배가 행해져 있는 농장일 것</p> <p>(2) 전환시기중의 농장(본항 본문에 규정하는 농장으로의 전환을 개시한 농장으로 본항 본문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에 대해서는 수확전 1년이하의 기간, 이하에 게재되는 농장 등에 대한 비배(肥培)관리의 기준, 농장에 파종 또는 모심기하는 종묘 및 농장에 있어서의 유해 동식물 방제의 기준에 근거해 농산물의 재배가 행해져 있는 농장일 것</p> <p>3. 채취장은 주변으로부터 사용금지자재가 오염되지 않는 일정한 구역으로 농산물을 채취하기 전의 3년 이상 사용금지자재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p>
농장에 있어서의 비배(肥培) 관리	<p>당 농장 등(농장 및 채취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 있어서 생산된 농산물의 잔량에 근거해 퇴비 사용, 그 밖의 당 농장 등 혹은 주변에 서식, 생육하는 생물의 기능을 활용한 방법만으로 토양의 성질로부터 유래하는 농지 생산력의 유지증진이 도모되고 있는 것. (당 농장 등 혹은 그 주변에 서식, 생</p>

사 항	기 준
	<p>육하는 생물의 기능을 활용한 방법에 의해서는 토질에 기초하는 농지 생산력의 유지증진을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표 1에 게재하는 비료 및 토양개량자재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p>
<p>농장에 파종 또는 모심기 하는 종묘</p>	<p>1. 농장 등의 조건의 기준, 농장 등에 있어서 비배(肥培)관리의 기준, 농장 등에 있어서 유해동식물 방제의 기준 및 수송, 선별,조제,세정(洗淨), 저장, 포장 기타의 공정에 관련된 관리의 기준에 적합한 종묘(종자, 묘, 묘목, 수목(穗木), 태목(台木) 기타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번식의 용도로 제공 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는 것. 다만,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p> <p>2. 유전자 조작 기술(효소 등을 이용한 절단 및 재결합의 조작에 의해 조작된 유전자를 만들어 그것을 생세포에 이식하고 증식하는 기술.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생산되지 않은 것</p>
<p>농장 등에 있어서 유해동식물의 방제</p>	<p>경종(耕種)적 방제(작목 및 품종의 선정, 재배시기의 조정, 기타 농작물의 재배관리의 일환으로써 통상 행하는 작업에 유해동식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유해동식물의 방제를 행하는 것을 말함), 물리적방제(빛, 열, 소리 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인력,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해동식물의 방제를 행하는 것을 말함) 및 생산적 방제(병해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미생물, 유해동식물을 포식하는 동물 또는 유해동식물이 기피하는 식물, 유해동식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식물의 도입 또는 그 생육에 맞도록 환경의 정비로부터 유해동식물의 방제를 행하는 것을 말함) 또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한 방법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농산물의 급박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경종적 방제, 물리적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법만으로는 농장 등에 대한 유해동식물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에 게재하는 농약만이 사용될 수 있는 것)</p>

사 항	기 준
수송, 선별, 조제, 세정, 저장, 포장 기타의 공정에 관한 관리	<p>1. 수송, 선별, 조제, 세정, 저장, 포장 기타의 공정에서 유기농산물 이외의 농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p> <p>2. 수송, 선별, 조제, 세정, 저장, 포장 기타의 공정에서 유해동 식물의 방제 또는 품질의 유지개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별표2에 기재하는 농약 및 별표 3에 기재하는 조제용 등 자재(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조제된 것은 제외)만인 것</p> <p>3. 병해충 방제, 식품의 보존, 병원균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방사선 투시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것</p> <p>4.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농약, 세정제, 소독제 기타의 약제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p>

### (유기농산물의 명칭표시)

제5조 유기농산물의 명칭표시는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사 항	기 준
표시의 방법	<p>1. 다음 예 중 하나에 의해 기재</p> <p>(1) 「유기농산물」</p> <p>(2) 「유기재배농산물」</p> <p>(3)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p> <p>(4) 「유기재배농산물○○」 또는 「○○(유기재배농산물)」</p> <p>(5) 「유기재배○○」 또는 「○○(유기재배농산물)」</p> <p>(6) 「유기○○」 또는 「○○(유기)」</p> <p>(7) 「오가닉○○」 또는 「○○(오가닉)」</p> <p>(주) 「○○」에는 일반적인 농산물의 명칭을 기재할 것</p> <p>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채취장에서 채취된 농산물에 있어서는 전항의 (1), (3), (6) 및 (7) 예의 어느 것에 의해 기재하고 전환시기중인 농장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정하는바에 의해 기재하는 명칭의 전 또는 후에 「전환시기중」이라고 기재할 것</p>



## 나.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

### ① 제정의 경위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은, 2001년에 코텍스 총회에서 유기축산물의 국제기준에 대해서도 채택된 것,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도 규격 제정의 요망이 있던 것을 밟아 JAS조사회에 있어서의 심의를 거치고, 2005년10월에 농림수산대신에 의해 고시되었음.

### ② 유기축산물의 생산원칙

환경에의 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 해 생산된 사료를 급여 하는 것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서 동물의 생리학적 요구 및 행동학문적 요구에 배려해 사육 한 가축 또는 집금화 등 생산하는 것으로 되고 있음.

## 다.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 ① 제정의 경위

2000년에,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과 함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이 제정되어 2005년에는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의 제정에 수반해, 유기축산물의 가공식품도 포함한 규격으로 개정되었고 2006년에 일부 개정되었음.

###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제정 2000년1월20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60호  
일부개정 2003년11월1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885호  
전부개정 2005년10월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6호  
일부개정 2006년2월28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10호  
일부개정 2006년 10월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464호

#### (목적)

제1조 이 규격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원칙)

제2조 유기가공식품은 원재료인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2005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5호) 제3조에 규정하는 유기농산물 (이하 「유기농산물」 이라 함.) 및 유기축산물의 일본농림규격 (2005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8호) 제3조에 규정하는 유기축산물 (이하 「유기축산물」 이라 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조 또는 가공의 과정에서 보호 유지하는 것을 취지로하며,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가공방법을 이용

하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및 약제의 사용을 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3조 이 규격에서 다음의 표의 왼쪽란의 용어는 각각의 동표의 오른쪽란과 같다.

용어	정의
유기 가공식품	다음 조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가공식품으로서, 원재료(식염, 물 및 가공 조제를 제외)의 중량을 점하는 농산물(유기농산물을 제외.), 축산물(유기축산물을 제외.), 수산물 및 이들 가공품의 중량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말함.
유기 농산물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원재료(식염, 물 및 가공조제를 제외.)의 중량을 점하는 농산물(유기농산물을 제외.), 축산물, 수산물 및 이들의 가공품 중량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말함.
유기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원재료(식염, 물 및 가공조제를 제외.)의 중량을 점하는 농산물, 축산물(유기축산물을 제외.), 수산물 및 이들의 가공품 중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말함.
유기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유기농산물가공식품 및 유기축산물가공식품 이외의 것을 말함.
조작DNA 기술	효소 등을 이용한 절단 및 재결합의 조작에 의해, DNA를 연결하여 맞춘 조작DNA분자를 제작하여 이것을 생세포에 이입하거나 증식시키는 기술을 말함.
전환기간 중 유기 농산물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 제4조의 표 포장 또는 채취장의 항 기준란 1의 (2)에 규정하는 전환기간 중의 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함.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

제4조 유기가공식품의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항	기준
원재료 (가공 조제를 포함)	다음에 기재한 것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1. 다음 중,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격부표시가 붙여져 있는 것. 단, 그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자에 의해 생산되고,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제14조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해 격부된 것에 있어서는 이에 한하지 않음.

사 항	기 준
원재료 (가 공 조제를 포 함)	<p>(1) 유기농산물 (2) 유기가공식품 (3) 유기축산물</p> <p>2. 1 이외의 농축산물. 단, 이하의 것을 제외. (1) 원재료로서 사용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과 동일한 종류의 농축산물 (2) 방사선 조사가 행해진 것 (3) 조작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p> <p>3. 수산물 (방사선조사가 행해진 것 및 조작 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을 제외.)</p> <p>4. 농축수산물의 가공품(1에 열거한것((2)에 열거한것에 한함), (원재료로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한 종류의 가공식품, 방사선조사가 행해진 것 및 조작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을 제외.)</p> <p>5. 식염 6. 물</p> <p>7. 별표1의 식품첨가물(조작DNA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것을 제외. 이하 동일.)</p>
원재료의 사용비율	<p>원재료(식염, 물 및 가공조제를 제외함)의 중량에 차지하는 이 표 원재료(가공조제를 포함)의 항목 기준의 란2,3,4 및 7(가공조제를 제외)에 열거하는것의 중량의 비율이 5%이하여야함</p>
제조, 가공, 포장, 보관, 그 외의 공정에 관한 관리	<p>1. 제조 또는 가공은,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조작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생물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 이하 동일.)에 의한 것으로서, 식품첨가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도로 할 것.</p> <p>2.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축산물은 다른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p> <p>3. 유해동식물의 방제는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에 의할 것. 단, 물리적 또는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방법만으로는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별표2의 약제(조작DNA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것을 제외.)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이 경우에는 원재료 및 제조로의 혼입을 방지할 것.</p> <p>4. 유해동식물의 방제, 식품의 보존, 병원균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방사선조사를 행하지 않을 것.</p> <p>5. 이 표 원재료 (가공조제를 포함.)의 항의 기준 및 이 항의 1부터 4까지에 게재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된 식품이 농약, 세정제, 소독제, 그 외 자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p>

(유기가공식품의 명칭 및 원재료명의 표시)

제5조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명칭 표시 및 원재료명의 표시는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분	기 준
명칭의 표시	<p>1. 다음 어느 것에 의해 기재할 것</p> <p>(1) 「유기OO」 또는 「OO (유기)」</p> <p>(2) 「Organic OO」 또는 「OO (Organic)」</p> <p>(주) 「OO」에는 해당가공식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할 것.</p> <p>단, 유기농축산물가공식품 가운데 「OO」에 기재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일반적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농림수산 대신이 정하는 것에 의함.</p> <p>2. 1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환기간 중 유기농산물 또는 이것을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을 원재료로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1의 예의 어느 것에 의해 기재하는 명칭의 앞 또는 뒤에 「전환기간중」이라고 기재할 것.</p>
원재료명의 표시	<p>1. 사용한 원재료 가운데, 유기농산물(전환기간 중 유기농산물을 제외), 유기가공식품(전환기간 중 유기농산물을 원재료로 한것을 제외) 또는 유기축산물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인 명칭에 「유기」 등의 문자를 기재할 것.</p> <p>2. 전환기간 중 유기농산물 또는 이것을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을 원재료로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1의 기준에 의해 기재하는 원재료명의 앞 또는 뒤에 「전환기간중」이라고 기재할 것.</p>

## 2.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제도

### 가. 유기 식품의 검사인증제도

#### [검사인증제도의 구조]

##### 1) 등록인증기관의 등록

- 농림수산성 대신은 신청을 받아 JAS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고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함. 등록인증기관의 인정사업방법을 정한 인정사무규정 및 인정수수료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성 대신이 인가함

##### 2) 사업자의 인정(認定)

- 등록인증기관은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가공식품 제조업자로부터의 인정신청을 받아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의거 심사를 행하고 인정함. 이 인정은 서류심사 및 실지(實地)검사에 의해,
  - 가. 농장 또는 가공공장이 유기생산기준(유기JAS규격)에 맞는 것
  - 나. 해당규격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와 생산관리기록의 작성이 적절하게 행할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의해 행함

##### 3) 인정사업자의 조사

- 등록인증기관이 인정한 생산농가와 제조업자가 인정한 후에도 유기JAS규격에 의해 생산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정업무규정에 의거 최저 1년에 1회 조사를 행함

##### 4) 인정사업자에 의한 평가

- 인정(認定)을 받은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가공식품 제조업자는 생산·제조과정의 기록 등에 의거 자신의 생산·제조한 식품을 평가하고 유기JAS마크를 부착하여 시장에 제공함

#### [표시의 규제]

- 1)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명칭표시에 곤란이 예상되어 일반소비자 선택에 있어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 특히, 필요한 물자로서 정령(政令)지정되어 있음(JAS법 제19조의10제1항 및 JAS법 시행령 제29조)

- 2) 이 법률에 의거 유기농산물의 일본농림규격 또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사업자에 대한 평가표시(유기JAS마크)가 부착되지 않으면 「유기」, 「오거닉」 또는 이것과 비슷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2001년4월1일부터 시행)
- 3) 상기1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대신에 의해 명칭표시의 제거·개선 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JAS법 제24조의3)이 부과됨

#### ■ JAS법 제19조의10 제1항

「누구든,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일본농림규격에 인정된 농림물자이고, 해당 일본농림규격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며 해당 일본농림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방법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 생산된 기타 농림물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이것을 방지하면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로 지정한 품목(이하 「지정농림물자」라 칭함)에 대해 해당 지정농림물자 또는 그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해당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평가표시가 부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일본농림규격에서 정한 명칭표시 또는 이것과 비슷한 표시를 부착해야 함」

#### □ JAS법 시행령 제29조

「법제19조의10 제1항의 법령에서 지정하는 농림물자는 다음과 같은 농림물자로 함」

1. (유기농산물)
2.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 VI. 향후전망

- 일본은 유기농 시장 초기 단계이나 유럽이나 미국 및 중국 등에게 있어서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수출대상국으로, 높은 소득수준, 식품안전 의식에 대한 고취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향후 유기농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을 시사함
- 현재까지 일본 유기농산물 분야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 및 가공식품 분야에서의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유기JA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유기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국산 유기농산물의 일본 수출가능성은 시기상 다소 이르며 일본의 유기농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고 일본의 소비자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산 유기농산물의 일본 수출은 다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 유기농산물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1. 국제기준(Codex)에 입각한 유기농업의 정착

- 한국의 경우 국제기준에 입각한 유기농업은 아직도 초기단계이고 관련제도도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한국에서 재배된 유기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Codex 유기농산물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거나 미국, 유럽의 여건만을 고려하여 제정된 Codex가이드라인을 한국여건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으로의 유기농산물 수출을 위해 일본의 유기인증기관과의 한·일 공동인증체제를 모색하거나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이 일본 농림수산성의 공식인증기관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대일수출 주력품목부터 시범수출 실시

한국의 대일수출 주력품목이며 일본 소비자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심스럽게 시범수출을 실시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포장 관리가 요구됨

##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유기재배농장은 인근 일반재배농장의 농약살포 등에 의해 오염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장을 조성하여 수출유기농산물의 핵심체로 육성

유기농업이 활성화되고 투입 노동시간의 감축, 올바른 유기농산물의 생산 등을 위해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집중교육

## 4. 유기농산물의 국내 내수시장의 확보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내 내수시장의 확보가 선행된 후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내 및 수출시장의 인지도를 강화하여 고품질 고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참고 1 : 유기농식품 관련기관 리스트 및 사이트

- JAS협회 <http://www.jasnet.or.jp>
- 일본유기농업연구회 <http://www.joaa.net>

※ 참고 2 :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 리스트

등록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특정비영리 활동법인호 고현유기농 업 연구회	<a href="http://www.kisweb.ne.jp/hyoyuken">http://www.kisweb.ne.jp/hyoyuken</a>	<a href="Http://www.Kisweb.ne.jp/hyoyuken/html7.html">Http://www.Kisweb.ne.jp/hyoyuken/html7.html</a>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兵庫?神?市 中央?中山手 通七丁目 28番33?	078-367-8567
주식회사 아 화 스 인증센터	<a href="http://www.afasseq.com">http://www.afasseq.com</a>	<a href="Http://www.Afasseq.Com">Http://www.Afasseq.Com</a>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및 외국	東京都港? 新橋4丁目 30番4? 藤代ビル	03-5400-2272
사 단 법 인 전국애농회	<a href="http://www.ainou.or.jp">http://www.ainou.or.jp</a>	<a href="Http://www.Ainou.or.jp/nintei/nintei-tebiki.htm">Http://www.Ainou.or.jp/nintei/nintei-tebiki.htm</a>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三重?伊賀 市別府 692番地 の3	0595-52-0108
유한책임 중간법인 민간?작 연구소 인증센터	<a href="http://inasaku.or.tv/center/">http://inasaku.or.tv/center/</a>	<a href="http://inasaku.or.tv/center/price_list.html">http://inasaku.or.tv/center/price_list.html</a>	유기농산물	국내	?木?河?郡 上三川町 大字?堂 72番地	0285-53-1198
특정비영리 활동법인가 고시마현유 기농업협회	<a href="http://www.koaa.or.jp">http://www.koaa.or.jp</a>	<a href="Http://www.Koaa.or.jp/shiryo/shiryo.html">Http://www.Koaa.or.jp/shiryo/shiryo.html</a>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福岡? 佐賀? 長崎? 熊本? 大分? 宮崎? 鹿?島? 及び沖??	鹿?島?鹿? 島市西 田二丁目 1番4?	099-258-3374
유한회사 오 가 닉 인정기구	<a href="http://oco45.net">http://oco45.net</a>	<a href="Http://oco45.Net">Http://oco45.Net</a>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및 외국	福岡? 大野城市南 ヶ丘二丁目 23番14?	092-589-2245
SGS제팬	<a href="http://www.jp.sgs.com">http://www.jp.sgs.com</a>	別添[PDF]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및 외국	神奈川??浜市 西?みなとみ らい二丁目2 番1??浜ラン ドマ?クタワ? 38階	045-330-5030
주식회사 미야자키현 綾 町	<a href="http://www.town.aya.miyazaki.jp/ayatow/index.html">http://www.town.aya.miyazaki.jp/ayatow/index.html</a>	別添[PDF]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宮崎? 東諸? 郡綾町	宮崎?東諸? 郡綾町大字 南?1128 番地	0985-77-0100

등록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多野유기시스템인회 정심사위원회		別添[PDF]	유기농산물	群馬? 埼玉? 新潟? 及び長野?	群馬?多野郡 鬼石町鬼石 7 2 4 番地 2	0274-52-4352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에히메현 유기농업 연구회	Http://www.12.Ocn.ne.jp/~aiyuken/	Http://www.12.Ocn.ne.jp/~aiyuken/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島? 香川? 愛媛? 及び高知?	愛媛?今治市? 新屋敷町五丁目 4 番 2 ?	0898-22-2434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유기농업생산단체중앙회	Http://www.Yu-ki.or.jp	Http://www.Yu-ki.or.jp/tejun/ryokin.htm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東京都 千代田? 外神田 六丁目 1 5 番 1 1 ?	03-5812-8055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오가네추얼푸드협회	Http://jona-japan.org/	Http://jona-japan.org/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및 외국	東京都 中央?京橋 三丁目 5 番 3 ?竹河岸ビル 3 階	03-3538-1851
주식회사 에코디자인 인증센터	Http://www.Eco-de.co.jp	Http://www.Eco-de.co.jp/cost.html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및 외국	東京都 千代田? 神田司町 二丁目 7 番地	03-5283-2626
에코사도?큐에이?제팬유한회사	Http://ecocert.Qai.jp	Http://ecocert.Qai.jp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및 외국	神奈川県?川崎市高津?坂?三丁目 2 番 1 ? 神奈川サイエンス?パーク?ビル	03-5413-7330
아이시에스일본주식회사	Http://pure-foods.Co.jp-	別添[PDF]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및 외국	神奈川県?? 浜市都筑? 茅ヶ崎東四丁目 5 番 1 7 ?	045-949-4620
사단법인 나라현식물방역협회		別添[PDF]	유기농산물	나라현	奈良?奈良市 登大路町 3 0 番地	0742-27-7442
재단법인 일본곡물검정협회	Http://www.Kokken.or.jp	Http://www.Kokken.or.jp/etc01_02.html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와 미국 및 중국	東京都 中央?日本橋兜町 1 5 番 6 ?	03-3644-6410
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Http://www.Jfrr.or.jp	Http://www.Jfrr.or.jp/business/busine9.htm	유기가공식품	국내	東京都? 谷?元代? 木町 5 2 番 1 ?	03-3469-7132

등록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구마모토현 유기농업 연구회	Http://www. Kumayuken. Org/	Http://www. Kumayuken. Org/jas/ commission/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山口? 福岡? 佐賀? 長崎? 熊本? 大分? 宮崎?及び 鹿?島?	熊本?熊本市 新南部二丁 目 5 番 1 3 ?	096-223-6771
재단법인 자연농법 국제연구 개발센터	Http://www. Infrc.or.jp	Http://www. Infrc.or.jp/ ojas/ojarules/ ojaschergelist. Htm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岡?熱海市 田原本町 9 番 1 ?	0557-85-2001
유한회사 오시아이 에 제 팸	Http://www. Ocia-jp.com	Http://www. Ocia-jp.com/ jas/JASfee.htm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및 외국	東京都港? 新橋四丁目 2 1 番 7 ?	03-5733-2267
사 단 법 인 일본과 협력회	Http://www. Kaju-kyo. Ecnet.jp-	Http://www. Kaju-kyo. Ecnet.Jp/ MyPage/JAS/ tesuuryou.pdf	유기가공식품	국내	東京都港?芝 大門一丁目 1 0 番 1 ?	03-3435-0732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유기농업 인 증 협 회		別添(PDF:57KB)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大阪府吹田市 江坂町一丁目 2 3 番 1 9 ?	06-6330-0823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아카돈보	Http://www. Akatonbo. Or.jp	Http://www. Akatonbo.or. Jp/gyoumu. Htm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山形? 福島? 群馬? 新潟? 富山?及び 長野?	新潟?新?田市 月岡?泉 6 7 0 番 地 1	0254-32-1320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八ヶ岳유기 농업자협회	Http://web. Mac.com/ ayap06/iweb	Http://web. Mac.com/ ayap06/iweb	유기농산물	야마나시현 및 나가노현	山梨?北巨摩郡 小淵?町上笹尾 3 3 3 2 番 地 1 3 3 5	0551-36-4530
재 단 법 인 일본탄산음료 검 사 협 회	Http://www. Tansan.jp	Http://www. Tansan.jp/ koueki6. Html	유기가공식품	국내	東京都港?芝浦 二丁目 1 7 番 1 3 ?	03-3455-6851
해외물자검사 주 식 회 사	Http://www. Omicnet.com	Http://www. Omicnet.com/ omicnet/ ocd.html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사료	국내 및 외국	東京都中央? 日本橋兜町 1 5 番 6 ?	03-3669-5184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와카야마 유기인증협회	Http://www. Vaw.ne.jp/ aso/woca-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和歌山? 和歌山市 西高松一丁 目 6 - 4	073-421-6545

등록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기후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기후현	岐阜?岐阜市 藪田南二 丁目1番1?	058-272-1111 (?線2846)
쓰루오카시	Http://www. City. Tsuruoka. Lg.jp	別添[PDF]	유기농산물	山形?鶴岡市 のうち? 藤島町の?域	山形?鶴岡市 藤島字笹花 25番地	0235-64-2111 (?線151)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유기농업 추진협회	Http://www3. Ocn.ne.jp/ ~yusuikyo/ ~yusuikyo/ ryokin.html	Http://www3. Ocn.ne.jp/ ~yusuikyo/ ryokin.html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森? 岩手? 宮城? 秋田? 山形? 福島? 茨城? ?木? 群馬? 埼玉? 千葉? 東京都 神奈川? 新潟? 富山? 山梨? 長野? 岐阜? ?岡?及び愛知?	東京都豊島? 南大塚二丁 目14番 12?	03-5940-2313
재단법인 나가노현 농림연구재단		別添[PDF]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u>나가노현</u>	長野?長野市 北石堂町 1177番地 3	026-236-2020
재단법인 북농회	Http://www7. Ocn.ne.jp/~ hoarc/ninsho/ framepage. Htm	Http://www7. Ocn.ne.jp/ ~hoarc/ ninsho/top_ cost/cost.htm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u>홋카이도</u>	北海道札幌市 中央?北二? 西二丁目	011-242-2285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토쿠시마현 유기인증협회		別添[PDF]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u>도쿠시마현</u>	?島??島市 かちどき 橋一丁目 41番地	088-655-8368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에이삭크	Http://www. Axis-asac. Net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u>국내 및 외국</u>	岩手?盛岡市 前九年三丁目 3番17?	019-605-3345
주식회사 일본종합과학	Http://www. Ntsc.co.jp	別添[PDF]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u>국내</u>	?島?福山市 箕島町南丘 399番地 46	084-981-0181

등록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가이도 유기인증협회	Http://www. Acohorga. Org	Http://www. Acohorga.org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국내	北海道札幌市 北?北七?西六 丁目1番地1	011-737-3011
재단법인 야마카타현 농업진흥기구	Http://www. S-kikou. Com	別添(PDF)	유기농산물	야마카타현	山形?山形市? 町一丁目 9番30?	023-642-2905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환경보전 네트워크	Http://www. Epfnetwork. Org/okome	別添(PDF)	유기농산물	?森? 岩手? 宮城? 秋田? 山形?及び 福島?	宮城?仙台市 ?葉?上杉一 丁目16番 3?JAビル 別館5階	022-261-7348
재단법인 식품환경 검사협회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사료	국내	東京都 中央?京橋 三丁目 7番4?	03-3535-4351
돗토리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돗토리현	鳥取?鳥取市 東町一丁目 220番地	0857-26-7257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오오이타 유기농업 연구회	Http://www. D-b.ne.jp/ oitayuki/	別添(PDF)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山口? 福岡? 佐賀? 長崎? 熊本? 大分? 宮崎?及び 鹿?島?	大分?大分市 大字宮崎 835番地 の2橋本ビル 2階	097-567-2613
사단법인 아키타현 농업공사	Http://www. Ak-agri. Or.jp	別添(PDF)	유기농산물	아키타현	秋田?秋田市 中通六丁目 7番9?	018-884-5512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일본생태계 농업협회	Http://www. E-com-net. Org/JEFA/-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와 캄보디아, 베트남 및 태국	東京都 中央?月島一 丁目21番 12?	03-3532-6283
사단법인 사이타마현 원예협회		別添(PDF:55KB)	유기농산물	사이타마현	埼玉? さいたま市 浦和?高砂三 丁目12番 9?	048-829-3391
사단법인 오카야마현 농업개발 연구소	Http://www6. Ocn.ne.jp/~ nokaiken/ index.htm	Http://www6. Ocn.ne.jp/ ~nokaiken/ yuuki/yuuki. Htm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사료	오카야마현	岡山?赤磐市 大?田798 番地の3	0869-57-2000

등록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후쿠시마현	Http://www4.Pref.fukushima.jp/nougyou-centre/	別添 [PDF:38KB]	유기농산물	후쿠시마현	福島?郡山市 和田町高倉 字下中道 1 1 6 番地	024-958-1708
특정비영리 활동법인도 호트가이도 오기너추진 협 회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국내 및 외국	北海道札幌市 北?あいの里 四?三丁目 4 番 2 7?	011-778-7502
사 단 법 인 나가사키현 식품위생협회	Http://homepage3.nifty.Com/nagasaki~sk/~sk/	別添 [PDF:69KB]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나가사키현	長崎?西彼 杵郡長?町 高田? 3 6 4 0 番地 3	095-883-6830
재 단 법 인 히로시마현 환경보건협회	Http://www.Kanhokyo.Or.jp/		유기가공식품	히로시마현	?島??島市中??北町 9 番 1 ?	082-293-1511
이시카와현		別添 [PDF:72KB]	유기농산물	이시카와현	石川?金?市 鞍月 1 丁目 1 番地	076-225-1623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고오치현농 유업 연 구 회	Http://www1.Quolia.com/kochi-yuken/	Http://www1.Quolia.com/kochi-yuken/ninshou.html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島? 香川? 愛媛?及び 高知?	高知?高岡郡 四万十町?石 6 6 5 番地 高知?立農業 大?校?	0880-24-1250
유 한 회 사 오스트라리안 사티화이도 오 가 닐	Http://www.Australianorganic.com.Au	別添 [PDF]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외국 (일본을 제외)	オ?ストリア クイ?ンズラン ド州 チャ?ム サイドギン ビイロ?ド 7 6 6 2 階	010-61-7- 3350-5706
비 시 에 스? 에 코 ? 가 란 티 ? 지엠비에이치	Http://www.bcs-oeko.de/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외국 (일본을 제외)	ドイツ ニュルン ベルグ市 チンベルン 通り 2 1	03-5563-0868	
콘 트 롤 ? 유 니 온 ? 사티피케손즈	Http://www.controlunion.Com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외국 (일본을 제외)	オランダ ズヴォラ 8025 B S ドクタ?クリ ンケルトヴ エヒエ 28 b	03-5532-7658	
세 루 스 유한회사	Http://www.Ceres-cert.Com	Http://www.Ceres-cert.Com/downloads/list_of_fees_06_07_17.pdf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외국 (일본을 제외)	ドイツ ババリ ア州 ハップル グフォルデル ハスラフ 1	49(0)9158- 928290

등록 인정기관	홈페이지	인증수수료 등	인증대상	인증지역	사무소	문의처
인스티튜토 훅 마켓에코로지	<a href="http://www.Imo.ch">Http://www.Imo.ch</a>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외국 (일본을 제외)	スイス ヴァイ ンフェルデン C H 8 5 7 0 ヴェストシュ トラ?セ 5 1	41-(0)-71- 626-0626
I C E A (이추아)	<a href="http://www.Icea.info/">Http://www.Icea.info/</a>	<a href="http://www.Icea.info/LinkClick.aspx?link=Doc%2fM.RCJAS+03+Tariffario+Ed01+Rev01.Doc&amp;tabid=82">Http://www.Icea.info/LinkClick.aspx?link=Doc%2fM.RCJAS+03+Tariffario+Ed01+Rev01.Doc&amp;tabid=82</a>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외국 (일본을 제외)	イタリア ボロ?ニャ? ボロ?ニャ市 マジョ? レ通り 2 9 番	(+39)-051- 272986 ?線3
CCPB- 유기농업 제품관리조합	<a href="http://www.Ccpb.it">Http://www.Ccpb.it</a>	別添 [PDF:98KB]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및 유기축산물	외국 (일본을 제외)	イタリア ボロ?ニャ? ボロ?ニャ市 ヤコボ?パロ ツイ通り 8	0039-051- 6089811